

인천지방법원 2022. 11. 23 선고 2022가단2611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23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지분에 관하여 2022. 1. 10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3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2 ‘청구원인’ 및 ‘변경된 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임택준

별지